



질의회신

오정의
행정안전부 지방세 운영과



지방세 관련 질의회신 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조사없이 판단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판단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지방세 부과·징수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원동기 교체차량의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Q 질의내용

자동차 엔진을 경유용에서 LPG용으로 개조하는 경우 차량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A 회신내용

사용연료를 경유에서 LPG로 변경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동기 변경에 해당하는 바, 해당 변경으로 차량의 가액이증가되었다면 「지방세법」 제7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 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3145, 2011. 7. 1.】

2. 취득 이후 박물관으로 변경시 취득세 면제 여부

Q 질의내용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여 수족관으로 설치·운영하다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감면 유예기간)에 박물관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박물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적용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A 회신내용

가. 구 「대전광역시세 감면조례」(2010.12.31. 조례 제3908호로 개정전의 것) 제8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 감면의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귀문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박물관이 아닌 수족관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개관하여 운영한 경우라면, 취득시점에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이나 박물관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취득’이라는 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시점 이후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3170, 2011. 7. 4.】

3.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 여부

Q 질의내용



법인이 공부상 지목변경 없이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실상 지목변경을 사유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

A 회신내용

사실상의 지목변경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토지의 가액도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공부상 지목변경 없이 노후된 휴게소를 철거하고 그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한 것은 지목을 대지에서 주차장으로 사실상 변경한 것으로서 해당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법인장부로 확인될 경우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3172, 2011. 7. 5.】

4. 국가 등에 귀속 부동산 취득세 비과세 여부

Q 질의내용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인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이 반드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어야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A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본문에서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호는 사회기반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

[지방세분야] 질의회신

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시기, 용도 등을 충족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국가 등에 귀속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이 이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는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43346 판결)고 할 것이고, 귀속 또는 기부채납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함은 준공후 바로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형식의 같은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진방식뿐만 아니라, 준공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기간만료시 소유권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형식인 제3호의 추진방식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의 사업시행 추진방식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조 제3호의 방식으로 국가 등에 귀속되더라도 당해 부동산이 반드시 사회기반시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귀문과 같이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이면 족하고 부동산을 국가 등에 공여함에 있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형식으로 되어 있고, 국가 등이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참조) 할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3254, 2011. 7. 8.】

5.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에 대한 과점주주 적용 여부

Q 질의내용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중 1인이 해당 조합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A 회신내용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지만 설립과 해산, 정관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타 사항들은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고, 조합에 대해 「민법」은 그 재산을 합유물로 하여 처분·변경을 제한할 뿐 만 아니라 각 조합원 지분에 대해서도 처분·분할을 제한하고, 조합원들에게 타 조합원의 변제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은 무한책임사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지방세운영과-3312, 2011. 7. 12.】

6. 호텔시설 임대시 재산세 경감대상 직접사용 여부

Q 질의내용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호텔시설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하는 지 여부

A 회신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2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호텔을 경영하는 자가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경감대상으로 규정함에 있어, '직접 사용'이라 함은 호텔을 경영하는 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로서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감심2008-182, 2008.6.12. 결정 참조)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재산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지만,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지방세운영과-3352, 2011. 7. 13.】

7. 동일 건물내 이전 유흥주점 취득세 종과세 여부

Q 질의내용

구분소유 되지 않는 건물내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해 취득세를종과세한 후 5년 이내에 동일 건물내 다른 층으로 면적증가 없이 이전한 경우 다시 유흥주점영업장(고급오락장) 설치로 보아 취득세 종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A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종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은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단서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면서 그 제3호는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 종과세는 하나의 과세객체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에 관한 사항으로 하나의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행위는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것이지 건물내 위치별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구분소유되지 않은 동일 건물내의 일부가 유흥주점영업점(고급오락장)에 해당되어 취득세가 종과세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사치성 재산의 취득 억제라는 취득세 종과세의 입법취지가 달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분소유가 되지 않는 동일 건물내에서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를 종과세한 후 5년 이내에 위치를 다른 층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영업장 면적의 증가가 없었다면, 이를 다시 취득세 종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감사원 2000.1.11, 심사결정 2000-7 참조)고 할 것입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최종 판단할 사항입니다.

【지방세운영과-3324, 2011. 7. 13.】



8.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범위 및 감면세액 산정 방식

Q 질의내용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등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감면대상 사업시설과 기타사업시설 사업장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 범위 및 감면세액(감면비율) 산정방식

A 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21조의2에서 국내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사업 등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사업에 대해 재산세 감면(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시설(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의 감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특정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특례제도임을 비추어볼 때, 재산세의 감면범위는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외국인투자 사업과 기타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재산세의 감면대상세액은 감면대상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또한, 생산시설 등의 사업장은 각 특성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하므로 감면대상 재산부문의 세액산출을 위한 감면비율의 결정 또한 그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감면사업장과 기타사업장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의 감면비율은 “감면대상 사업장의 재산세 과표”를 “총 사업장의 재산세 과표”로 나누어 산정하고,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세의 감면비율 산정방식(감면사업 소득 ÷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지방세운영과-4562호(’09.10.28) 참조)이라고 사료되나, 구체적인 적용방식은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지방세운영과-3384, 2011. 7. 14.】

9. 장학법인 임대부동산 수익금 감면범위

Q 질의내용

시,도를 달리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중고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등록번호 변경 등록면허세 과세해당 여부

A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차량의 소유권,저당권 설정외 기타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건당 7천5백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귀문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권 이전관련 사항만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과 등록번호 변경이 순차적으로 발생된 것이므로 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지방세운영과-3528, 2011. 7. 25.】

10. 판매용 수입선박의 실수요용 전환에 따른 취득시기

Q 질의내용

수입자가 판매용으로 수입한 선박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수요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A 회신내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는 수입에 의한 취득은 해당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날을 취득일로 보되, 선박 등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은 날과 계약상의 잔



금지급일 중 빠른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입자가 판매용으로 선박을 수입한 후 판매가 여의치 않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실수요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수입자가 직접 실수요자가 되는 것으로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부상 판매용 등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 반입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지방세운영과-3561, 2011. 7. 26.】

11. 판매용 수입선박의 실수요용 전환에 따른 취득시기

Q 질의내용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경우,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때, 당해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없는 경우 조상공무원이 조사한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 인정할 수 없다면 전문평가기관의 감정평가 시 수수료는 누가 낼 것인가의 여부

A 회신내용

가.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에 ‘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거래가격 등을 조사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 또는 2개 이상의 전문평가기관의 평균 감정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유로이 거래가 없는 경우, 2개 이상의 전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 그 평균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또한, 당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닦는 자에게 있으므로, 감정평가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조정요구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94누12920, 1995.3.28. 참조).

【지방세운영과-3535, 2011. 7. 26.】

12. 외국법인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지

Q 질의내용

국내에 본점 및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국내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인지 아니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각의 시·군” 인지 여부

A 회신내용

가. 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세의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9조제4항에서는 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국내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대리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인 국내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며, 지방세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세의 납세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소재지 관할 자치단체라할 것입니다. ☺

【지방세운영과-3533, 2011. 7. 26.】